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05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김준혁 · 이수진 · 권칠승

이기헌・조 국・부승찬

모경종 · 강경숙 · 백승아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

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 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 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

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6조의2).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운동경기마다 다르다는 점과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신설, 제51조제2항).
- 라.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 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호, 제51조제2항).
- 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기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 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제4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 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제51조제2항 중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를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제49조제1호 및 제49조의2제1호"로 한다. 제5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팔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 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권 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 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 설>

1. • 2. (생략)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

제6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벌칙) -----

-----.

-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두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한 자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49조의 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생략)

제51조(몰수·추징) ① (생 략)

-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
 다.
- ③ (생략)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 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49조의2(벌직)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
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u>
제2호, 제49조제1호 및 제49조
의2제1호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다만, 제49조제1호의 경우는 제
외한다.
제55조(과태료) ①

<u><신 설></u>	<u>1.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u>
	위반한 자
<u> <신 설></u>	2.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
	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 한 자
<u>1</u> .· <u>2</u> . (생 략)	<u>3</u> . · <u>4</u>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